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의 수당지급 예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비 등의 지원하도록 보훈단체의 비용보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비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나.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으로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easuga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설립된 단체

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다. 그 밖에 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를 갖춘 단체로서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비지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보훈예우수당)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 본법」----- ----- -----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u>이 조례에서</u> <u>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u> <u>같다.</u>
<u><신 설></u>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희생· 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 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 는 사람을 말한다.
<u>이 조례에서 “보훈단체 등”이라</u> <u>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2. “보훈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 계 법령에 의거 설립된 단체	<u>가.</u> ----- -----
2.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u>나.</u> ----- -----
3. 그 밖에 법 제3조제2호의 국	<u>다.</u> -----

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를 갖춘 단체로서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제6조(보훈단체 등 비용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 등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7조(복지지원) 생략 제8조(시행규칙) 생략	----- ----- ----- ----- 제6조(보훈단체 등 비용보조)-----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 비지원 제7조(보훈예우수당)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과 같음)
--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사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7조(보훈예우수당)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제외) 7,027명 월 3만원으로 전제함

(2017. 6월 말 , 국가보훈처)

구 분	계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제외)	비 고
전 체	30,798	18,165	12,633	
만 65세 이상	25,167	18,140	7,027	
만 65세 미만	5,631	25	5,606	-

나. 추계 결과

○ 5년간 추계

(단위 : 천원)

항 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보훈예우수당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12,648,6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 근거 : 조례 제7조 제1항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계
세출	보훈예우수당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12,648,600
	소계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12,648,6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12,648,600
	일반회계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2,529,720	12,648,6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